

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
경기도 공고 제2026-1788호(2026. 6. 29.)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일

시 흥 시 장

1.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

대상지역	면적(k㎡)	비 고
거모동 외 15개동 (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일부)	1.53	- 기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

2. 허가구역 재지정기간 : 2026. 7. 4. ~ 2027. 7. 3. (1년)

3. 허가구역 지형도면 : 생략 (기존 허가구역과 동일)

3.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: 토지e음 참조 (<http://www.eum.go.kr>)

※ 재지정 토지조서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허가구역 재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.

※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(031-310-38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